

2026년 제1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1. 일 시 : 2026년 1월 23일(금) 오후 4시
(회의소집일 : 2026년 1월 14일)
2. 장 소 : 대학본부 2층 회의실
3. 개회기도 : 형희경 의원
4. 참석현황 (정원 12명, 재적 12명, 참석 9명)

구성위원	정원	재적	참석자명단	불참자명단
교원	3명	3명	형희경 이정미	김대용
직원	2명	2명	김동인	홍성표
조교	1명	1명	신다빈	
학생	3명	3명	안표진 최지훈	유민주
동문	2명	2명	안윤정 이자영	
외부인사	1명	1명	정우식	
합계	12명	12명	9명	3명

- 배석자 : 김세령 교무처장, 김경휘 기획처장, 박용선 사무처장, 한송희(간사)

5. 안건

- 1)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개정 건.
- 2) 2026학년도 1학기 교육과정 개편 자문 건.
- 3) 2025학년도 교비 추경예산(안) 자문 건.
- 4) 2026학년도 교비 본예산(안) 자문 건.
- 5) 2026년 제1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확인 서명자 선임 건.

6. 성원확인 및 개회선언

- 형희경 의장이 재적 12명 중 9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개회를 선언하다.

7. 전 회의록 접수

- 전 회의록 확인 후 이정미 의원의 동의와 김동인 의원의 재청으로 참석의원 9명 중 9명이 찬성하여 원안대로 접수하기로 의결하다.

형희경	012m	김동인
-----	------	-----

8. 회의내용

1) 제1호 의안 :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개정 건.

- 대학의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개정요청(붙임 1. 사무처-3030)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개정에 대해 논의하다.
- 형희경 의장이 박용선 사무처장에게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 박용선 사무처장이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개정(안)을 아래 신구대조표로 설명하다.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p>제3조(자격) ① 교원 및 직원 평의원은 전임교원 혹은 정규직원으로 5년 이상 근속한 재직자어야 한다.</p> <p>② 조교 평의원은 재직중인자로 한다. <신설 2020.9.3.></p> <p>③ 학생 평의원은 정규등록을 한 재학생 이어야 한다. <개정 2020.9.3.></p> <p>④ 평의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20.9.3.></p>	<p>제3조(자격) ① 교원 및 직원평의원은 전임교원 및 정규직원 중 재직 중인 자로 한다.</p> <p>② 현행과 동일</p> <p>③ 학생 평의원은 등록 중인 재학생으로 한다.</p> <p>④ 현행과 동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임교원 및 정규직원의 자격으로 5년 이상 근속 여부가 평의원 참여 대상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재직기간 요건을 삭제하고, 재직 중인 자로 자격을 완화하여 구성원의 대표성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p>제4조(선임) ① 평의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임한다.</p> <p>1. 교원은 학칙 제82조의 교수회에서 추천한 자를 총장이 위촉한다. 단, 교무위원은 제외한다.<개정 2018.2.27.></p> <p>2. 직원은 학칙 제85조2의 직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총장이 위촉한다. 단, 교무위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8.2.27.></p> <p>3. 조교는 조교회의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총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0.9.3.></p> <p>4. 학생은 총학생회 및 학부학생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2.27., 2020.9.3. ></p>	<p>제4조(선임) ① 현행과 동일</p> <p>1. 현행과 동일</p> <p>2. 현행과 동일</p> <p>3. 조교는 제3조 제2항에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 총장이 위촉 한다.</p> <p>4. 학생은 총학생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총장이 위촉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조교회 추천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조교 추천 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규정에 명문화하여 제도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단일학과로 통합된 현행 구조에서 학부 학생회를 전제로 한 추천 요건이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워 현행 조직 체계에 부합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평의원 결원 발생 시 후임자 선임 절차는 전항에 명시되어 있

형희경

이재우

김동인

<p>5. 동문은 총동창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5.1., 2020.9.3.></p> <p>6.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학부모,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보건복지전문가, 교육전문가, 공무원, 회계전문가, 법률전문가, 기독교 목회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8.2.27., 2020.9.3.></p> <p>② 평의원 중 결원이 발생할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임한다.</p> <p>1. 교원은 재직중인 평의원이 속하지 아니한 교수회에서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p> <p>2. 교원을 제외한 구성단위를 대표하는 평의원은 제1항의 제2호 이하와 같은 방법으로 선임한다.</p>	<p>5. 현행과 동일</p> <p>6. 현행과 동일</p>	<p>으므로 관련 규정을 중복되지 않도록 정비하고, 아울러 후임자로 선임된자의 임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임기 해석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p>
--	-----------------------------------	---

- 정우식 의원이 개정안 제3조 제3항의 현행 '정규등록'과 개정안의 '등록'의 용어 차이에 대해 질의하자, 박용선 사무처장이 현재 대학에서 '정규등록'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있으며 '등록'이라는 용어만 쓰고 있어 '정규등록'이라는 용어가 오히려 혼선을 주므로 개정하고자 함을 설명하다.
- 김동인 의원이 개정안 제4조(선임) 제1항 제3호와 관련하여 교원·직원·학생 의원은 각 구성원 단체의 추천을 거쳐 선임하는 것과 달리 조교 의원을 총장이 위촉하는 방식이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개진하다.
- 박용선 사무처장이 현재 우리 대학은 단일학부 운영으로 별도의 조교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실질적인 조교 인원 또한 2명에 불과하여 현실적인 선임 절차를 반영한 안이라고 설명하고 상위 법령위반 여부를 즉시 확인하겠다고 하다.
- 박용선 사무처장이 해당 상위법인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0조의6(대학평의원회의 구성)(불임 2)을 의원들에게 배포하고 설명하였으며, 의원들이 검토한 결과 제4조(선임) 제1항 제3호의 개정(안)에 문제가 없음을 의결하다.
- 정우식 의원이 위 개정(안)의 개정 사유가 합리적이며 대학 운영의 실무적인 측면에서도 특별한 쟁점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학교 측에서 제시한 개정(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하다.
- 형희경 의장이 불임1.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개정(안)에 대해 의원들의 동의 여부를 물으니, 정우식 의원의 동의와 김동인 의원이 재청하였으며, 참석의원 전원이 찬성하여 개정(안)대로 통과하기로 심의하다.

형희경	이민수	김동인
-----	-----	-----

2) 제2호 의안 : 2026학년도 1학기 교육과정 개편 자문 건.

- 혁희경 의장이 김세령 교무처장에게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 김세령 교무처장이 예수대학교 교육과정 주요 개편 사항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다.

- 다 음 -

2026학년도 1학기 교육과정 주요 개편 사항

① 교양 교육과정

개편 사유	개편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 요구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활동관련 교과목 확대 - 학습활동 수준과 강도 반영한 학점 인정 • 교과목 고도화 및 전임 교원의 교양 교과목 담당 비율 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탁구, 배드민턴 교과목 이수 대상 학생 확대(1학년→ 1, 2학년) • 자기주도역량UP 학점 변경: 1학점→2학점 • 역사 관련 기존 교과목 2개 폐지 • 역사 관련 2개 교과목 신설 및 담당 교강사 변경(강사→전임교원) • 교과목명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이해와 심리→인간관계와 소통 • 교과목명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중심 ESG 이해와 실제 → 대학생을 위한 ESG-A to Z
• 소통공감MD 교양 교과목 간 중복 최소화 및 MD특성 반영 교과목 고도화	
• 교과목 내용과 교과목명 관련성 제고	
• 대학 정책연구 결과 반영	
• 교양 영역별 균형 고려(자유학예-자연)	

② 교직 교육과정

개편 사유	개편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졸업생들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 현재 보건교사의 역할을 고려할 때, 상담 관련 역량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교육과정을 개편하기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사회학을 폐지하고 생활지도와 상담을 신설하기로 함

③ 전공 교육과정(간호)

개편 사유	개편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문제해결 디자인씽킹 교과 공동운영 대학의 학사 일정 및 여건 변화로 공동 개설이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문제해결 디자인씽킹 교과 운영 여건의 미비,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과 폐지

* 사회복지학부 전공 교육과정 개편사항 없음

혁희경

이정미

김동인

- 안윤정 의원이 보건교사의 상담 역할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생활지도와 상담' 교과목을 신설한 점이 시의적절하다고 하며 체육 교과목 중 생존 수영 등 신체 활동 교과목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다.
- 정우식 의원은 교양 교육과정 운영 시 전북 지역의 농생명 바이오산업 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교과목을 확충하여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다.
- 형희경 의장이 '사회문제해결 디자인씽킹' 교과목이 타 대학 전공 학생들과의 융합을 통해 높은 교육적 효과를 거두었음을 언급하며 폐지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고 향후 지역 내 인근 대학의 타 전공(물리치료, 약학, 사회복지 등)과 연계한 융합·연계 교과목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다.
- 김세령 교무처장은 폐지에 따른 아쉬움에 공감하며 지역 내 대학들과 협력하여 타 전공에 대한 이해를 돋고 융합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신규 교과목 개발을 검토하겠다고 하다.
- 이상과 같이 자문하기로 교육과정 개편(안)에 대해 안윤정 의원의 동의와 정우식 의원의 재청하고 참석의원 전원이 찬성하다.

3) 제3호 의안 : 2025학년도 교비 추경예산(안) 자문 건.

- 형희경 의장이 김경휘 기획처장에게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 김경휘 기획처장이 2025학년도 교비 추경예산(안)(3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다.

- 다 음 -

예산 8,285,930,409원(2차 추경), 추경예산 8,351,945,579원, 증 66,015,170원

- 김경휘 기획처장이 2025학년도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대학원 연구등록금 수입 감소 및 대학 혁신지원사업 추가 교부금 반영, 예금 이자 등 주요 수입 변경 사항과 시설 보수 등 환경 개선을 위한 지출 변경 사항을 보고하다.
- 김동인 의원이 예산안에 대한 본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이후 의견 반영 절차에 대해 질의하니, 김경휘 기획처장이 자문 의견은 이사회에 보고되며 중요 사항은 이사회 개최 전 즉시 점검·정정하는 등 실질적인 기제로 반영되고 있음을 설명하다.
- 김동인 의원이 예금 이자 수입의 규모에 따른 원금 관리 현황을 질의하니 김경휘 기획처장이 한국교직원공제회 등에 안정적으로 예치·관리하고 있으며 건물의 노후화 등에 대비한 건축기금 재적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하다.
- 김동인 의원이 회계연도 말 예산이 집중·소진되는 현상을 언급하며 합리적인 예산 사용 방안 마련을 요청하니 김경휘 기획처장이 부서별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집행을 독려하겠다고 방안을 설명하다.
- 3차 추경예산(안)에 대해 의원들의 자문내용은 이상과 같으며, 원안대로 자문하기로 김동인 의원의 동의와 안표진 의원의 재청으로 참석의원 전원이 찬성하다.

형희경

이우미

김동인

4) 제4호 의안 : 2026학년도 교비 본예산(안) 자문 건.

- 형희경 의장이 김경휘 기획처장에게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 김경휘 기획처장이 2026학년도 교비 본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다.

- 다 음 -

2025년 3차 추경 예산 8,351,945,579원, 2026년 본예산 8,056,337,000원, 감 295,608,579원

- 김경휘 기획처장이 등록금 및 적립금 이자 수입과 교직원 보수 인상, 필수 경상비, 간호학부 기자재 확충 및 실험실습비 증액 등을 반영한 2026학년도 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하다.
- 이정미 의원이 수업에서 우수한 특강강사 초빙을 위해 특강강사료 인상을 요청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반영여부를 질의하니 김경휘 기획처장이 본예산(안)에는 반영이 안되었으며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다고 하다.
- 이정미 의원이 본예산(안)이 확정되기 전 교직원 보수 협의 절차가 있어야 함에 대해 질의하자, 김경휘 기획처장이 시기적으로 의원님의 의견이 맞지만 이사회 일정 준수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향후 절차 개선을 하겠으며, 이후 보수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추가 경정예산에 반영할 수 있음을 설명하다.
- 의원들이 2026년 본예산에 대해 이상과 같이 자문하였으며, 신다빈 의원의 동의와 정우식 의원의 재청으로 참석의원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대로 자문하기로 의결하다.

5) 제5호 의안 : 2026년 제1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확인 서명자 선임 건.

- 형희경 의장이 본 회의록 간서명자의 지명을 요청하니 형희경 의원, 이정미 의원, 김동인 의원 이상 3명이 추천되니 지명하기로 하고 참석의원 9명 중 9명의 찬성으로 지명 의결하다.

6) 기타 의견

- 안윤정 의원은 의료 현장의 QI 활동 사례를 들어 대학 행정에도 문제점 도출-개선-환류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며 대학평의원회의 실질적인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다.
- 정우식 의원은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구체적인 요구안을 가지고 자문에 임하는 문화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다.
- 이정미 의원이 대학평의원회 논의된 사항의 반영 결과에 대해 차기 회의 시 보고가 이루어 지기를 제안하다.
- 형희경 의장이 의원들의 의견을 대학에 전달하기로 하다.

9. 폐회선언

- 형희경 의장이 폐회에 대한 성안을 요청하니 김동인 의원이 동의하고 안윤정 의원이 재청하여 의장이 가부를 물어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폐회를 선언하니 17시 23분이었다.

형희경

이정미

김동인

기록 : 한송희간사 ~~한송희~~

확인 : 형희경의원 (임) ~~임~~ 경

이정미의원 (임) ~~임~~ 정미

김동인의원 (임) ~~임~~ 동인

신다빈의원 (임) ~~임~~ 다빈

안표진의원 (임) ~~임~~ 표진

최지훈의원 ~~최지훈~~

안윤정의원 ~~안윤정~~ 윤정

이자영의원 (임) ~~임~~ 자영

정우식의원 (안) ~~안~~ 우식

형희경

이정미

김동인



예수대학교

(Jesus University)

의장	형희경
간사	한송희

수신자 대학평의원회 의장
(참조)

제 목 2026년 예수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개정(안) 발의 건

- 관련: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17조(개정)
- 예수대학교는 위와 관련하여 학과 폐과 및 조교회 부재 등 교내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선출 방식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규정명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안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 상황에 따른 조교 평의원 선임 방식의 효율적 정비 사회복지학부 폐과 등 학제 개편에 따른 학생 평의원 추천 기준 정비 평의원 선임 및 보궐 절차 명확화를 통한 운영의 안정성 제고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교 평의원: 조교회 추천 방식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변경 학생 평의원: 총학생회·학부 추천 방식에서 총학생회 추천 방식으로 범위 조정 절차 정비: 평의원 추천·선임 절차 및 결원 발생 시 보궐 절차 명확화

- 본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17조 제2항에 명시된 의결정족수를 준수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신구대조표 및 규정 전문) 1부. 끝.

예 수 대 학 교 총 장



담당 한송희
협조

시행 사무처-3030 (2026. 1. 13.)
우 54989 주소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83
전화 (063)230-7732 전송 (063)230-7776

사무처장 박용선

총장 김찬기
대학평의원회 (2026. 1. 14.)
www.jesus.ac.kr
songhee0107@jesus.ac.kr

[별지 제1호 서식]

규정 입안서

1. 규정명	·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2. 구분	제정()	일부개정(√)	전부개정()		
3. 부서	사무처				
4. 제안사유 (제정, 개정,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대학 상황에 따른 조교 평의원 선임 방식의 효율적 정비평의원 선출 방식을 개선하여 구성원의 대표성을 원활히 확보하고 대학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평의원 선임 및 보결 절차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5.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교원 및 직원 평의원 자격 요건 중 재직기간 제한을 삭제하고, 전임교원 및 정규직원 중 재직 중인 자로 완화하여 신규 구성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함.조교 평의원 선임 방식을 학내 여건에 맞춰 총장 임명 방식으로 변경함.학제 개편 상황을 고려하여 학생 평의원 선출 기준을 총학생회 추천 등으로 조정함.평의원 추천·선임 절차와 결원 발생 시 보결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함.				
6. 참고사항	① 관련규정				
	② 합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2026년 1월 23일 대학평의원회 심의2026년 2월 교무위원회			
7. 자문요청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규정 개정안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개정규정) 1부. 2. 규정전문(제정, 개정, 폐지 규정) 1부.				
	2026년 1월 13일				
	시무처장				
	기획처장 귀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p>제3조(자격) ① 교원 및 직원 평의원은 전임교원 혹은 정규직원으로 5년 이상 근속한 재직자 이어야 한다.</p> <p>② 조교 평의원은 재직중인자로 한다. <신설 2020.9.3.></p> <p>③ 학생 평의원은 정규등록을 한 재학생 이어야 한다. <개정 2020.9.3.></p> <p>④ 평의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0.9.3.></p>	<p>제3조(자격) ① 교원 및 직원평의원은 전임교원 및 정규직원 중 재직 중인 자로 한다.</p> <p>② 현행과 동일</p> <p>③ 학생 평의원은 등록 중인 재학생으로 한다.</p> <p>④ 현행과 동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임교원 및 정규직원의 자격으로 5년 이상 근속 여부가 평의원 참여 대상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재직기간 요건을 삭제하고, 재직 중인 자로 자격을 완화하여 구성원의 대표성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p>제4조(선임) ① 평의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원은 학칙 제82조의 교수회에서 추천한 자를 총장이 위촉한다. 단, 교무위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8.2.27.> 2. 직원은 학칙 제85조2의 직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총장이 위촉한다. 단, 교무위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8.2.27.> 3. 조교는 조교회의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총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0.9.3.> 4. 학생은 총학생회 및 학부 학생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2.27., 2020.9.3. > 5. 동문은 총동창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5.1., 2020.9.3.> 6.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학부모, 지역사회에서 	<p>제4조(선임) ① 현행과 동일</p> <p>1. 현행과 동일</p> <p>2. 현행과 동일</p> <p>3. 조교는 제3조 제2항에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 총장이 위촉한다.</p> <p>4. 학생은 총학생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총장이 위촉한다.</p> <p>5. 현행과 동일</p> <p>6. 현행과 동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조교회 추천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조교 추천 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규정에 명문화하여 제도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단일학과로 통합된 현행 구조에서 학부 학생회를 전제로 한 추천 요건이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워 현행 조직 체계에 부합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평의원 결원 발생 시 후임자 선임 절차는 전항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중복되지 않도록 정비하고, 아울러 후임자로 선임된자의 임기를 명확히

<p>활동하고 있는 보건복지전문가, 교육전문가, 공무원, 회계전문가, 법률전문가, 기독교 목회자 중에 서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8.2.27., 2020.9.3.></p> <p>② 평의원 중 결원이 발생할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원은 재직중인 평의원이 속하지 아니한 교수회에서 추천 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2. 교원을 제외한 구성단위를 대표하는 평의원은 제1항의 제2 호 이하와 같은 방법으로 선임한 다. 		<p>규정함으로써 임기 해석의 혼선을 방지 하고자 함</p> <p>② 평의원 중 결원이 발생할 시 전 항의 규정 절차에 따라 후임 을 선임한다. 이때 후임자의 임 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 다.</p>
--	--	--

3-2-15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예수대학교 정관 제66조의 2 및 대학 학칙 제85조의6에 의거 설치되는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2.27.>>

제2조(구성) 평의원회는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12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2.27.,2020.9.3. >

1. 교원 3명<개정 2018.2.27.>>
2. 직원 2명
3. 조교 1명<신설 2020.9.3.>>
4. 학생 3명<개정 2018.2.27.,2020.9.3.>>
5. 동문 2명<개정 2020.9.3.>>
6.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1명<개정 2020.9.3.>>

제3조(자격) ① 교원 및 직원평의원은 전임교원 및 정규직원 중 재직 중인 자로 한다.
<개정 2026.2.00.>

- ② 조교 평의원은 재직중인자로 한다. <신설 2020.9.3.>>
③ 학생 평의원은 등록 중인 재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0.9.3.><개정 2026.2.00.>
④ 평의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20.9.3.>>

제4조(선임) ① 평의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임한다.

1. 교원은 학칙 제82조의 교수회에서 추천한 자를 총장이 위촉한다. 단, 교무위원은 제외한다.<개정 2018.2.27.>>
 2. 직원은 학칙 제85조2의 직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총장이 위촉한다. 단, 교무위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8.2.27.>>
 3. 조교는 제3조 제2항에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 총장이 위촉한다.<신설 2020.9.3.><개정 2026.2.00.>
 4. 학생은 총학생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2.27., 2020.9.3., 2026.1.5., 2026.2.00.>
 5. 동문은 총동창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5.1., 2020.9.3.>>
 6.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학부모,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보건복지전문가, 교육전문가, 공무원, 회계전문가, 법률전문가, 기독교 목회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8.2.27.,2020.9.3.>>
- ② 평의원 중 결원이 발생할 시 전 항의 규정 절차에 따라 후임을 선임한다. 이때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2.00.>

제5조(자격상실) ① 교원과 조교 및 직원은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변동일로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20.9.3.>

1. 퇴직
2. 휴직
3. 3개월 이상의 해외연수, 파견, 연구년
4. 징계에 의한 직위해제

② 학생 평의원이 임기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신분변동일로부터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1. 졸업
2. 휴학
3. 3개월 이상의 교환학생 파견
4.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

제6조(임기)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각 구성단위는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4조 제2항의 방법으로 평의원 후보를 총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7조(의장과 부의장)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소집) ① 평의원회는 의장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또는 총장의 요청에 의해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소집은 회의 개최 7일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회의개최 일시와 안건을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8.5.14.><개정 2021.2.9.>

③ 회의 개최일을 정함에 있어 학생 대표가 반드시 1명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회의소집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8.5.14.>

④ 회의 소집 후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은 대학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한다. <신설 2019.12.20>

제9조(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① 평의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때 반드시 본인이 출석하여야 하며, 위임이나 대리로 참석할 수 없다.<개정 2018.5.14.>

② 위원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 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1.2.9.>

제10조(심의사항)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대학헌장의 제개정, 제3호 및 제5호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개정 2009.12.1.>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대학의 현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함)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개정 2009.12.1.>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7. 임시이사 선임, 학교법인 이사추천에 관한 사항 <개정 2018.2.27.>

제10조의2(개방이사추천위원회 운영규정)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둔다.<개정 2009.12.1.>

제11조 삭제 <2009.12.1.>

제12조 삭제 <2009.12.1.>

제13조 삭제 <2009.12.1.>

제14조(비밀유지) 평의원 및 관계 교직원은 평의원회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항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간사) 평의원회는 회의록 작성 등 관련 사무 및 운영을 위하여 대학 직원 중 1인을 간사로 둔다.<개정 2018.2.27.>

제16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및 법인 정관을 준용한다.

제17조(개정) ① 이 규정의 개정은 총장 또는 재직 평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이 규정의 개정은 평의원회 재직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평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총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다.

[본조신설 2018.5.14.]

제18조(회의록의 내용과 공개) ① 평의원회 회의록에는 개최일시 및 장소, 참석자명단, 안건 및 의결사항, 폐회시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평의원회 회의록은 회의 개최일 이후 10일 이내에 대학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단, 공개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하여는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1.2.9.>

[본조신설 2018.5.14.]

제19조(평의원회 의원 공개) 평의원회의 의원은 그 임기 동안 대학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본조신설 2018.5.14.]

부 칙

- ① 이 규정은 2007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최초 위촉되는 평의원의 임기는 2009년 2월 28일까지로 하며, 학생평의원의 임기는 2008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20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2. 제2조(구성) 제3호에 해당하는 ‘조교’ 위촉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2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시행 2025. 12. 23.] [대통령령 제35922호, 2025. 12. 23., 일부개정]

교육부 (사립대학지원과) 044-203-6959

교육부 (학교정책과) 044-203-6702

제10조의6(대학평의원회의 구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는 교원·직원·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며,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평의원회의 구성단위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 9. 25.>

② 평의원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2. 11.>

③ 평의원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학생이 아닌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2. 2. 11.>

④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인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신설 2022. 2. 11.>

⑤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평의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2. 2. 11.>

[본조신설 2006. 6. 23.]

[제목개정 2020. 9. 25.]